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 '3억원 미만' → '4억원 미만' 상향조정 -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종합·전문건설업체 모두 원도급 받을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3억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11월 2일 공고분부터 이를 적용했다.

복합공사는 2종 이상 전문공사가 합쳐진 공사로서, 원칙적으로 종합건설업체만 원도급 받을 수 있으나, 일정 규모 이하의 복합공사(소규모 복합공사)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하지 않고도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은 발주자의 선택기회를 확대하고 기계설비와 같은 전문공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국토교통부령 제168호, 2014.12.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245호, 2015.11.2., 일부개정]
제13조의2(소규모 공사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로서 공종 간의 연계 정도가 낮고 안전·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사를 말한다.	제13조의2(소규모 공사의 범위) ----- ----- ----- ----- 4억원 ----- ----- -----